
입 법 정 보

2016-7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6
2. 「공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9
3.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0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4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10.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7
1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7
12.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8
1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9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9
15.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
1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21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1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19.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23
2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24
2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24
2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25
23.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25
24.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6
25.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7
26.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7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9
2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9
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30

3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31
3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33
32. 「무선설비규칙」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34
33. 「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35
34.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35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36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37
3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38
38.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9
39.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9
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0
4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	41
42.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2
4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2
44. 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방부)-----	43
4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43
4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4
4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5
48.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5
4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6
5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6
5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8
5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9
5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9
5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0
5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51
56.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원회)-----	54
5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54
58.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57
59.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7
60.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9
6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9
6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61
6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1
6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2
6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63
6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63
6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64
6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65
6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68
7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68
7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69
72.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69
7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71
7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71
75.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73
7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75
77.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75
78.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76
7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76
80.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76
81.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78
8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79
8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79
8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80
85.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81
86.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1

8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82
8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82
8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83
90.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83
9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84
9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84
93.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85
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5
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6
9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86
97.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87
9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88
99.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추진기구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자치부)	88
10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89
101.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89
10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90
103.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90
10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91
10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92
10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93
10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93
109.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95

정부입법예고 (2016.03.07.~03.24.)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07. • 마감일자 : 2016. 04. 18.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4030호, 2016.2.12. 공포, 2016.8.13.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 등의 정의, 과잉공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자격,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상법」 제174조에 의한 합병, 「상법」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 분할합병 등을 포함하여 각 호로 각각 규정
-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에 근거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함
- 적용범위(안 제4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해당 기업의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규정
-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운영(안 제5조, 제6조)
 - 1) 심의위원회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산업 및 기업정책, 기업구조조정, 조직재편 등과 관련한 연구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 2) 위원장은 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

-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규정
 - 2) 기초조사에는 산업별·업종별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등의 변화와 관련한 통계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안 제9조)
-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사업재편계획 시작 직전연도와 종료 연도의 자산수익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함
- 사업재편계획의 반려 사유(안 제10조)
- 주무부처 장관은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하도록 규정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같음
 - 2)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과잉공급 기준 충족 여부 등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와 함께 반려하도록 규정
 - 3)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규정
 - 4) 주무부처의 장은 합병비율이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성,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를 직접적으로 위한 경우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및 신청기업도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주요내용, 이행일정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이후에 승인기업이 영 제11조제5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거나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중대한 위반 등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함

○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안 제17조)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의 요건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

○ 자금, 연구개발, 고용안정 지원 등(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기업에게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제품 등의 생산·개발에 관한 연구활동 등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법 제31조제2항 각호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우선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규제불확실성 해소(안 제21조, 제22조)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업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교부해야 함

2) 기업이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

○ 벌칙(안 제24조, 제25조)

- 1)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 규정
- 2)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의 총합계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다만, 법 제27조의 세제지원에 의한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산정함

2.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3. 07. • 마감일자 : 2016. 04. 06.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법률 제13298호, ‘15.5.18 공포)에 따라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에 정기 안전검사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규정 삭제(제5조)
 - 1)현행 시행령 제5조가 공연법으로 상향입법(법률 제13957호, ‘16. 2. 3. 공포, 5. 4.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 재해대처계획 신고 기준 마련(안 제9조제1항~제2항)
 - 1)개정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비에 관한 사항 포함
 - 2)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제출기간 명시(매년 2월 28일까지)
-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제1항~4항, 별표1)
 - 1)개정 공연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규모 설정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 2)개정 공연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공연장 및 공연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및 기준 등)

3)공연장운영자등에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제출의무 부과

- 안전관리조직에 대한 설치기준 등 마련(안 제9조의3제1항~제5항, 별표 1의2)

1)개정 공연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규모 설정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2)개정 공연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공연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연장운영자등이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9조의4제1항~제3항, 별표 1의3)
- 정밀안전진단에 정기 안전검사가 포함됨을 명시(안 제10조제5항제3호)
- 공연법 제43조제2항제1의2호의 개정예 다른 과태료 신설(별표4.개별기준)
 - 1)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100만원~1,000만원)
 - 2)안전관리비를 사용방법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목적 외 사용금액 전액, 단 최대 1,000만원)

3.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3. 07. • 마감일자 : 2016. 04. 18.

- 방송법 개정('15.12.22)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 기준,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 마련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서 면제

○ 재산상황 제출서류 관련 규정 현행화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3. 07. • 마감일자 : 2016. 03. 17.

○ 재정부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정보화기획관의 재정 기능과 분석평가국의 사업 분석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재정분석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석평가국장 직위를 폐지하여 한국형헬기사업단을 신설하는 한편, 국방시설분야 효율적 자원배분과 업무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사업의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업무를 기술기획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18.

○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3373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

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
 -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 구성
 - 검증반장을 민간반원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 및 토론 주재
 -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POOL로 운영
 -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 통보
 -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07. • 마감일자 : 2016. 04. 18.

-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련해서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위탁증의 발급 제외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안 제39조 개정)

화물위탁증의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물의 범위를 화물위탁증 기재사항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일반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화물위탁증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발급한 화물 또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동일한 항만구역 내에서만 화물운송이 이루어지는 화물로 확대하고,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의무를 삭제하며, 동일한 화물을 1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화물은 1일 1회 발급으로 갈음하도록 함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예외대상 추가(안 제41조제13 개정)
견인차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별도의 가입 필요가 없는
피견인차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 화물운송서비스평가 기준 마련(안 제44조의5 신설)
화물운송서비스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평가하고, 정량평
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 특성상 필요시 정성평가가 가능하며,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대응성 및 화물운송서비스 제공
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
여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07. • 마감일자 : 2016. 04. 18.

-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은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운
송서비스 평가의 공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
련해서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운수사업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연장(안 제3조의2 신설)
운수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
을 완화하고자 함.
- 과징금 용도에 사업자단체의 교육실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
조의2 개정)
화물자동차 안전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시설이 부족한
시·도의 경우 사업자 단체가 교육실시 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
도록 하여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방법 마련(안 제9조의20 신설)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함
-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위반 시 처분 합리화(별표)
화물자동차 과적운행과 관련해서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발급해야 하는 화물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허가 취소 처분을 사업정지로 처분으로 완화하여 운송·주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07. ● 마감일자 : 2016. 04. 18.
- 폐기물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관리제도를 원칙적 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11호, 2015.7.20. 공포, 2016.7.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유형 및 유형별 재활용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승인절차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마련하고,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가능 유형을 규정(안 제4조의2)
 - 1)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 및 방법을 10개 유형(3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 2)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 유형을 지정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 내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기준 농도 설정(안 제14조의4)
사람의 건강 피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한 폐기물의 농도 설정
-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7)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폐기물 재활용 여부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대상 항목 및 분석·조사, 평가서 작성 등 평가 절차와 방법을 재활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
-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폐기물 재활용 여부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대상 항목 및 분석·조사, 평가서 작성 등 평가 절차와 방법을 재활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
-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 규모 설정(안 제14조의7)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성토재·복토재·도로의 기층재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이 20,000톤 이상 또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함
-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절차와 방법 및 승인조건(안 제14조의9, 안 제14조의10)
 -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작성한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재활용 허용여부 등을 승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 2)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시 승인 유효기간, 폐기물 종류와 양, 주변환경 피해방지 및 사후관리방안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4조의1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재활용 허용여부의 승인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등으로 재활용승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안 제14조의14, 별표 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마련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07.
- 마감일자 : 2016. 04. 18.

- 폐기물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관리제도를 원칙적 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11호, 2015.7.20. 공포, 2016.7.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유형 및 유형별 재활용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승인절차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유해성 항목 확대 및 유해성 제거·안정화 기준 설정(안 제7조의2)
 - 1)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출독성·감염성·부식성·금수성·산화성·자연발화성·폭발성·인화성 및 생태독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 2) 유해특성을 가진 폐기물도 유해특성을 제거·안정화할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해특성 제거 또는 안정화 기준을 마련
- 재활용 금지·제한대상 폐기물의 지정(안 제7조의3)
 - 1) 유해성이 적은 폐기물은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유해성이 큰 폐기물 중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대상 폐기물을 지정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요건 마련(안 제7조의4)
 - 1) 토양·지하수 등과 접촉하는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활용여부를 허용토록 규정
 - 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을 허용함에 있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요건을 마련

-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37조)
 - 1) 환경부장관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지정취소, 점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관련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10.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03. 07. • 마감일자 : 2016. 04. 18.
-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2016.4월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의 폐지 통합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징계처리기준 개정(안 별표1호)
 - ‘성실의 의무’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회계질서 문란 비위 유형과 구분하여 신설
- 폐지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반영(안 제1조, 제5조~제10조)
 - 인사혁신처 2016년도 인사관계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규정의 내용을 반영

1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03. 07. • 마감일자 : 2016. 04. 18.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 징계 감경하고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함
-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규정(안 별표1)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함
-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4조제1항)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 확대(안 제4조제1항제2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포함) 이상의 표창으로 확대

12.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3. 08. ● 마감일자 : 2016. 04. 18.
- ‘예술인의 정의’ 관련하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서 표준양식’을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
- 보고의 요구 등(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불공정행위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출석 요구 시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 불공정행위의 처리절차(안 제3조의4 신설)
 - 1) 불공정행위의 신고, 사실관계 조사 등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조의2제1항)
 - 1) 재단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 법 제10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재단 사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 권한의 위탁(안 제4조의4 신설)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조사 등 업무를 재단에 위탁함.

○ 과태료 기준의 설정(안 제5조 별표2호 나목)

1) 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1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3. 08. • 마감일자 : 2016. 04. 18.

○ 예술인 복지법 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함.

○ 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 실적 요건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월평균 5만 건 이상으로 정함

○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내국인 구매한도(미화 3,000 달러)를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 법규준수도 측정·평가의 활용 범위를 보세구역 관리, 과태료·과징금의 산정,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으로 정함.

○ 관세 등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08. • 마감일자 : 2016. 04. 18.

○ 세종특별자치시 중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특별자치시 외지역 거주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주택 최하층을 우선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제도 운용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일정 비율 배정 근거 마련(안 제34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자도 예정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공공임대리츠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LH·지방공사와 동일한 절차, 기준 등 적용(제25조제4항 제4호, 제26조제7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5항)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LH·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의 절차·기준 등에 있어서 LH 등에 적용되는 조문을 적용토록 명문화하고, 리츠 특성을 감안,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녀가구에 최하층 우선배정(안 제51조제3호)

다자녀가구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움에 따라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택소유 판정기준 보완(안 제53조제6호)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규정상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정책 취지나 형평성 등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임

15.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08. • 마감일자 : 2016. 04. 18.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시 하수도법 개정전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바로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지역 지정 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388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절차 등 개선(안 제1조의3, 제1조의4)
 - 지자체장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 요청시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환경부장관이 하수의 범람 등으로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한 시에는 1년 이내에 수립함
-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의 휴업·폐업 신고방법 간소화(안 제66조)
 -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이 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장이 등록관청 등에 송부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1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08. • 마감일자 : 2016. 04. 18.

- 의료급여사업 기본방향 및 대책,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현행 10인으로 제한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며, 중복급여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적용배제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자에 대한 당해연도 재진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및 신청 주체를 확대하며,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08. • 마감일자 : 2016. 04. 18.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

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 제13조의3제5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1)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는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 2)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 법 제16조의14제2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의 사전검토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3조의16, 안 제33조의17,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호서식)
 - 1) 사전검토의 대상을 규정(안 제33조의16)“
 - 2) “사전검토의 방법 및 비용 산정 기준 신설(안 제33조의17, 안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호서식)“
-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3호 규정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을 삭제함(안 제33조의4제1항제3호)
-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등 주요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23호 서식)하고, 환경성적 표지 인증 신청시 환경성 정보의 일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0조 및 별지 제30호서식)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08.
- 마감일자 : 2016. 04. 18.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및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21조의1제2항)
- 지정이 취소된 녹색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재지정 신청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안 제22조의7제2항)
-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관리 강화(안 제22조의10, 안 제22조의11제4항, 안 제22조의11제5항, 안 제22조의12, 안 제22조의13제2항, 안 제22조의14, 안 제22조의15)
 - 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 광고 시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내용, 매체의 종류, 횟수, 크기 등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의12)
 - 2) 과징금 부과 기준인 매출액을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제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안 제22조의13제2항)
 - 3)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영업수익을 적용하는 자를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로 규정(안 제22조의14)
 - 4)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적용받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의(안 제22조의14)
 - 5)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의15)

19.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09. • 마감일자 : 2016. 04. 18.

-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근거가 신설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 13580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중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승인 신청서류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의2, 별지 제6호의2서식)
- 방송법(제9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기술결합서비스 중지·중단 신고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안 제21조의2, 별지 제48호의2서식)

2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09. • 마감일자 : 2016. 04. 18.

- 방송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하고, 심사에 필요한 심사항목 및 심사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신설된 법 조항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 또는 중단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된 법 조항에 따라, 기존 승인 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정비함(안 제71조제1항 및 별표 4)

2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09. • 마감일자 : 2016. 04. 19.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보험료 카

드 납입을 가능하도록 하며, 재보험사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비(안 제41조제3항제4호, 제56조제2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불필요한 수집 근거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함.

- 보험료의 카드 납입 관련 근거 신설(안 제47조제3항)

결제 편의,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카드 결제의 보편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보험사 선정 관련 대상자 기준 요건 개선(안 제60조의3)

외국보험회사가 우체국보험의 재보험회사 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보험회사 기준 대상을 확대함

2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09. • 마감일자 : 2016. 04. 19.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별치 적용 관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3517호)」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 규정과 동일한 중복 조항 정비(안 제4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10조)

기준에 시행령으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분쟁조정 절차 조항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정비함

23.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3. 09. • 마감일자 : 2016. 04. 18.

- 방송법 개정('15.12.22./' 16.1.27.)에 따라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적용([별표 1의2] 및 [별표 5] 개정)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업무정지 3개월(승인 대상 제외),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적용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정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상향 입법('15.12.22./' 16.1.27.)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 내용 ▲ 분쟁조정 거부사유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시행령으로 규정(제21조의3 개정)
-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심사항목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기술방식에 따른 심사사항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규정하고 심사 처리 기한 등 심사 절차 마련(제5조의2 신설)
 기술결합서비스 관련 제재조치 기준으로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시 승인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및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7천만원 ▲ 사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적용([별표 1의2], [별표 4] 및 [별표 5] 개정)

24. 「공익법무관예관인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3. 09. • 마감일자 : 2016. 03. 21.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이 확대되고 국가소송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5.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09. • 마감일자 : 2016. 03. 24.

-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3.4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 2016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26.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09. • 마감일자 : 2016. 04. 18.

- 현행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등이 법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이 법으로 상향 규정되고 일부 건축물 또는 시설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수거등의 권고절차 신설(안 제24조의3)
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권고의 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통지하도록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계획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신설(안 제24조의4, 안 제24조의7)
권고를 수락한 사업자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수거등을 실시하고 실적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표의 방법 신설(안 제24조의5)
환경부장관은 신문, 방송 등의 언론과 정보망 등을 통해 권고 혹은 명령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수거등의 명령절차 신설(안 제24조의6)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명령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은 안 제24조의5를 준용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명령 및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의 조치(안 제24조의8)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거등을 조치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름
-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안 제51조)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세척·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대상범위를 대규모점포·아파트 등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과 병원·학교·공공업무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정함
-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안 제67조)
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와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09. • 마감일자 : 2016. 04. 18.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및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자활센터의 업무 처리에 있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조건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중앙자활센터가 자활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고,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42조)

2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제도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휴업·폐업 등 신고절차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행정처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절차 및 공시방법 등을 정함
-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제출 시 소

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도 첨부하여 제출 하도록 추가함

-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제2호퍼목 및 별표 2 제1호바목, 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6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제36호의4서식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법 및 입찰참가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함

- 시공능력 평가 방법에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전 지위승계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4)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에도 폐업 전 시공실적을 승계하도록 정함

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른 집행계획 등을 정함(안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 신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및 별표 5)
-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접수 및 신고 내용 확인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 법률 제1392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수장구조자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심해잠수사의 신체검사 실시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자격시험의 공고 관련 신설(안 제12조제2)
 - 자격시험의 실시 공고(응시인원 확정 후 시험실시 14일 전까지 공고)
- 응시원서의 제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신설(안 제12조의4)
 - 채점기준에 의거 자격시험 실시 후 시험성적표 작성
-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5)
 - 자격증의 신규 발급 및 재발급(분실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 절차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를 규정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6)
 - 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제출서류를 규정
-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7)

-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후 관보에 고시
- 교육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8)
 -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 갱 신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갱신신청서 제출
- 교육기관 신청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9)
 - 제12조의10에 따라 지정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설립 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0)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 :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
 - 지정취소 통지서 수신 시 교육기관 지정서 반납(14일 이내)
-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11)
 -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자→교육수료증(1년 유효) 발급
-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12)
 - 교육과정, 교육이수확인증 발급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
-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3)
 - 실기시험,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수수료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4)
 - (보수교육 수료증)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시 발급
 - (기간변경신청서) 보수교육 연기 및 참석 불가시 제출
- 자격의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5)
 -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 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
 - 처분 대상자 거주지 불분명 시 : 주소지의 관할 해경관서 게시판 공고(14일간)
- 심해잠수사 관리를 위한 신체검사 대상 기준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6)
 -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 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잠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군(軍) 복무 중 심해잠수 구조 경험자 중 구조본부의 장이 인정하는 자

3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 법률 제1392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목, 시험 실시 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추가(안 제6조제3항제2호)
 - (위촉 대상)「수난구조」→「수난구조,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
-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8조)
 - (추가 기능) 수난구조종사업무 중 부상을 입은자에 대한 부상등급의 결정 및 변경,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종사업무 중 부상자에 대한 치료 절차 추가(안 제30조)
 - 수난구조종사명령에 따라 구조업무 중 부상을 입은자 중 부상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는자에 대한 치료 실시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절차 준용
-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 등(안 제30조의2)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위한 공고 및 응시자의 응시원서 제출 사항
- 수상구조사 시험과목 등(안 제30조의3)
 -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사전교육 64시간 이수자에 대하여 실시
 -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채점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험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4)
 - 수상구조사 시험관리 위탁기관 지정 등
-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5)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0조의6)
 -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준용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7)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수상구조사 자격부여,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 (해양경비안전서장) 자격증 발급,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보수교육, 자격의 정지 및 취소처분

32. 「무선설비규칙」 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 고시인 무선설비규칙을 부령으로 상향하여 제정하고자 함
- 제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제3조~13조) 부령으로 상향
 -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은 방송, 해상, 항공업무용 등 업무별 기술기준의 일반적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부령으로 상향
 - ※ 전파법 제45조 개정
- 제3장 업무별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제14조~제34조) 삭제
 - 제1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삭제하여 세부 기술기준은 고시로 유지 (별도 고시로 제정)
 - 제2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삭제하여 세부 기술기준은 고시로 유지 (별도 고시로 제정)
- 제3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부령으로 상향(제14조~제16조)
 - ※ 전파법 제47조 개정
- 세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에 대해 고시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7조)

33.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15.5.22.공포/' 16.06.23.시행) 및 공중선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15.12.1.공포/ ' 16.6.2.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전파법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서식 마련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 임대 신청서 서식 마련
공중선을 안테나로 용어 정비 등
-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아마추어국 허가신청 사항 간소화에 따른 서식 정비
레이더를 레이다로 용어 정비 등

34.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15.5.22.공포/' 16.06.23.시행) 및 공중선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15.12.1.공포/ ' 16.6.2.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전파산업 육성을 위해 IoT사업 관련 규제완화, 무선종사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전파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위성주파수등 양도·임대 승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성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기타 개정사항)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상 열람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선’을 ‘안테나’로 용어를 정비하며,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함

○ 전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IoT사업 관련 규제 완화)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거리제한 규제 폐지 및 실용화 시험국에 대한 허가 검사 절차 간소화

(무선종사자 제도 개선) 선박국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정비 및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확대 등

(아마추어국 관리제도 개선) 아마추어국 허가신청 사항 간소화 및 준공검사 생략 범위 확대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완화) 무선국 시설자가 자체 측정하는 전자파강도 보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완화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지도·점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자막재난방송의 준수사항, 주관방송사의 역할 등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안 제23조)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대로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와 회선수가 50만 이상인 경우로 유지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의2제1항 ~ 제5항)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이를 위해 7일전 사전통지(긴급한 경우 예외 인정) 토록 하는 등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을 규정

○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의2제1항 ~ 제3항)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신규지정 또는 지정변경시 신고의무,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재난방송등의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항, 제6항)
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정비 및 SO·O위성·PTV가 재난방송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준수 사항 마련
- 주관방송사의 역할 규정(안 제28조의2제1항 ~ 제3항)
효율적인 재난방송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협력,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지원요청 근거 마련
- 과태료 부과조항 개정 및 별표 수정(안 제31조제1항 ~ 제2항)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가능함에 따라
- 과태료 증·감액 주체에 미래부 추가, 기준금액(별표) 수정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3. 17.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법률 제14071호, 2016. 3. 3. 제정, 2016. 3. 3. 시행)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71호, 2016. 3. 3. 타법개정, 2016. 3. 3.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구체화하고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2016. 3. 3.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별표 중 법률로 상향 조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법집행기관 협의회 구성원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안 제5조 제3항)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를 제공받는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이하 ‘법집행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

-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용 구체화(안 제11조의2 제6호)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구체화
- 법집행기관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절차 규정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안 제13조 제1항)

법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집행기관이 정보제공 요구시 따라야 하는 절차적 사항을 정한 규정에 국가정보원을 포함

- 별표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 삭제(별표의 5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가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별표에서 삭제

3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5.7.24. 공포, 2016.7.2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행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인증절차 등을 규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14.7월)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책·제도·법령 개선권고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 마련(안 제9조의2, 제9조의3)
-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주체 변경에 따라(행자부→개

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작성 절차 등 변경(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을 기업대표, 임원 또는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서장으로 명확히 함 (안 제32조)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 시행령 위임 사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인증기준·방법·절차·범위,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안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변경에 따라(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사무기구 등 관련 규정 변경 (안 제48조의2, 제50조)

38.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5년마다 학술실태조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77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학술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해 조사대상, 조사포함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9.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25.
- 학술진흥법(제13949호, 2016. 2. 3. 공포)에서 ‘제재부가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자 및 대학의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및 처분청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 연구용도와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연구용도와 사용한 금액규모별로 부과율을 차등적으로 적용(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 연구용도외로 사용하였으나 지체없이 원상회복한 경우로서, 단순과실에 기인하거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책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이 내에 독촉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유형별로 1백만원 부터 1천만원까지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3조 신설)

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10. • 마감일자 : 2016. 04. 19.

- 현행 수질오염물질(특정)로 지정된 페놀류를 유통량, 위해성, 처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물질로 세분하여 위해성에 따라 차등규제 함으로써, 일부 천연성분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불합리 해소
페놀류를 개별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라 5개 물질을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중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2개 물질에 대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입지제한의 판단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을 마련함
-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 등(안 별표 2, 별표 3)
 - 1) 페놀, 펜타클로로페놀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

규지정하고, 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지정

2) 페놀류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삭제

○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3)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신규지정되는 5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설정(안 별표 13의2)

1)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2개 물질에 대해 수질환경기준, 먹는물 기준, 배출허용기준(청정)을 고려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 마련

2) 페놀류 삭제

4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11. • 마감일자 : 2016. 04. 20.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7항의 신설에 따라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지침 마련 통보(안 제11조제1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점검에 필요한 실적자료 제출(안 제11조제2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그해의 실시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 점검결과 활용 및 실시계획 마련(안 제11조제3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성과관리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42.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1. • 마감일자 : 2016. 05. 09.

-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의 작업소를 그 밖의 의약품 작업소와 각각 분리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소의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약품 제조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4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1. • 마감일자 : 2016. 03. 31.

- 그간 화장품법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법령상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별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추세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소비자 요구에 따른 화장품의 포장 기재사항 규정(안 제19조제1항)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판매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0조)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자도 화장품법상 판매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 혼합·판매의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그 제조·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44. 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3. 11.
- 마감일자 : 2016. 03. 16.

-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사전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3. 31. 공포, 3.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 연간검증계획의 수립, 방위사업 검증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방위사업 감독기구의 임무와 권한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업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방위사업감독관은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방위사업감독관은 비리예방을 위해 방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비리 징후를 감시하여야 함.
-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면담권, 현장출입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짐
-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과 관련한 직원 등의 비위 또는 범죄혐의 발견 시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45. 국방부외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3. 11.
- 마감일자 : 2016. 03. 15.

- 국방시설분야 효율적 자원배분과 업무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사업의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8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4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11. • 마감일자 : 2016. 04. 20.

- 행정기관 위원회의 운영관련 법률에 따라 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임기규정과 제척(除斥)과 같은 불이익 처분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출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다른 국내공항을 환승하여 출국하는 환승객에 대한 중복 보안검색을 생략토록 하여 여행편의를 제고하며,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사항(1.19일 공포·시행)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기 위함
- 항공보안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와 제척(除斥) 근거신설(안 제2조제8항 신설)
행정기관 위원회법 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와 불이익처분 근거를 반영코자 함.
- 국내공항 출발 환승객의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내 출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환승공항에서 출국 전까지 외부의 비인가자 등과의 접촉으로부터 차단되는 경우 환승객 및 그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기장 등의 범인인도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제21조 별표)
항공보안법 개정사항(제25조 제1항, 제51조제1항5의2호, '16.1.19 공포·시행)을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4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11.
- 마감일자 : 2016. 03. 17.

- 경기도 북부 지역의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0명을 증원하며, 기존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그 명칭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두도록 하고, 종전에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관할이었던 의정부경찰서 등 11개 경찰서를 신설되는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관할로 변경하는 등 그 하부조직과 관할 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홍보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정보화장비담당관을 신설하고 총경 이하 0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총경 +0명, 경정·0명)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8.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03. 14.
- 마감일자 : 2016. 04. 04.

-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3898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합동사무소 설치 시 운영규약 작성·신고 의무 폐지(제9조, 제10조 삭제)
 - 공인노무사법이 개정(2016.1.27. 공포, 2016.4.28. 시행)으로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안 제5조)
 -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4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03. 14. • 마감일자 : 2016. 03. 24.
-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3898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관리 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현재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합동사무소 설치 시 규약 작성·신고 의무 폐지(제19조,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규약 작성 및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
-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26조제1항 제5호 신설)
 - 공인노무사 자격관리 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현재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5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4. • 마감일자 : 2016. 04. 25.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2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의무등록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및 운영 세부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가축 및 식육의 검사요청 대상 가축의 종류를 특정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장의 안전관리인증 방식을 현행 유형별에서 작업장별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허가 관청 중 한곳 방문으로 폐업신고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 절차 기준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 마련(안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2조까지, 안 제52조, 안 제59조, 별표11)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의 등록정보, 절차, 자금지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 위반 시행정처분 기준 및 등록 취소 기준을 신설함.

2) 의무 등록 대상인 조제유류를 가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의 등록 시행일을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함.

-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용 가축 및 식육의 검사요청 관련 세부 사항 마련(안 제5조의2)

검사를 요청할 경우 대상 가축은 사슴이며, 검사의 신청 및 합격표시, 검사의 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일반 도축검사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확대 및 시료량 명확화(안 제14조, 별표5, 별표6)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유형별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 세부사항은 식육가공업에 준하여 실시토록 하며, 자가검사 시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조항 정비(안 제51조의3 및 별표11)

위반 축산물에 대하여 영업자가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회수계획 및 결과 보고에 폐기계획 및 결과 등을 같이 보고하도록 함.

-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32조제3항, 제4항 및 제36조제3항)

세무서와 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인 허가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안전관리인증 방식 개선 등(안 제7조의3제1항, 제3항 및 별표14의2)

1) 축산물가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 유형에 상관없이 작업장별로 한

번만 HACCP 인증을 받도록 개선함

2) 축산물안전관리 통합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관련 자격을 완화함

3)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 시 시정명령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강제를 위한 제재기준(미이행시 인증취소) 신설

5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4. • 마감일자 : 2016. 04. 25.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2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등록관련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 사항 마련(안 제31조, 별표 4)
 -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처리, 취소 또는 시정명령,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평가 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무는 식품안전정보원장에게 위탁함
 -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 명확화(안 제14조, 제20조의2)

검사관의 직무 중 도축검사, 가축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와 통합운영 하도록 함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3)

5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14. • 마감일자 : 2016. 04. 25.
-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사로 등 도로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항목들을 장내기능시험에 추가하고, 자동차 성능 향상 등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초보운전자의 도로주행능력 및 안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로주행시험의 실격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통(연습)면허 소지자의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함(안 별표 23, 별표 24).
-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를 삭제함(안 별표 25).
-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실격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6,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함(안 별표 32).

5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14. • 마감일자 : 2016. 04. 25.
-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시점검 대상을 확대하며 안전관리비 지급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관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 민간 발주공사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제시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 기타(안 제117조제1항)
 -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5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14. • 마감일자 : 2016. 04. 25.
-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15년 140g/km → ' 20년 97g/km)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5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5.
- 마감일자 : 2016. 04. 25.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 제출 의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도입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 위임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용 합리화 및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10조 및 제32조)
 -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Zika)바이러스 등에 의해 국가비상상황 발생 및 생물테러, 기후변화 등 감염병에 의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관계부처에서 생물테러 및 신종플루 등 감염병에 대유행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어 요청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 이전에 제조(수입)을 허용하고자 함.
 - 3) 국가 비상상황 및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 및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제2항)
 - 1)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 융·복합기술 발달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전공 인정 범위를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로 확대하고 경력인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2)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의 경력기간 및 전공 범위를 완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 의료기기 업체에서 품질책임자 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

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기기 임상시험 변경·취소 내용 삭제(안 제23조)

1)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임상시험의 변경·취소 및 그 밖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시행)으로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

2) 임상시험 변경·취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사항으로 법률에 상향규정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6조)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제조(수입)업 변경허가가 신청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기 변경허가 사항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제조(수입)업 신규허가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의무가 없음

3) 이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하여 법률 간의 상충으로 인한 민원 혼란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용 합리화(안 제39조)

1)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법령으로 규정하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의료기기 특성 및 판매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의료기기 특성 및 판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기준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제출 근거 마련(안 제50조제2항)

1)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제조·수입·판매·사용내역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고 있음.

2)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시행)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제출 의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하위 규정에 기록제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 기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신속한 유통정보 파악을 통해 회수, 사용중지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으로 국민보건 위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운영 절차 마련(안 제59조의2, 별지 제50호의2, 제50호의3 서식)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의료기기 모니터링, 조사, 홍보에 참여하는 등 유통 의료기기 감시기능 보완 및 대국민 홍보 기능 강화하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가 도입됨.

2) 이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에 따른 위촉기간, 직무 범위, 교육 실시 및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소비자가 의료기기 감시참여 등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환경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업무 위탁 시 수수료 납부 근거 명확화(안 제65조제3항)

1) 의료기기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하며, 해당 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업무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116호,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인증

및 신고업무의 수수료에 대해 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의료기기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의 명확성 및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5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3. 15. • 마감일자 : 2016. 03. 25.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 참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보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5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3. 15. • 마감일자 : 2016. 03. 25.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배제 기업의 범위, 금융거래의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의 실익이 작은 기업 등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융채권자만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융거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안 제3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사적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채권은행의 요청 등으로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변경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채권은행, 기업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4조)

채권은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소기업 등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부당한 기업구조조정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제외 절차 마련(안 제6조)

주채권은행이 효율적인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채권자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들에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함께 합리적인 제외 사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채권은행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

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및 공동관리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관리절차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10조)

협의회 소집 시 협의회 개요·안전 등을 최소한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신규 신용공여 등 중요 안전의 경우 10일)할 것을 규정하고,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의견 개선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은행과 최다 채권자 간 협력 의무를 부과함.

○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안 제11조)

기업구조조정 실무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채권의 청산가치, 채권의 종류·성격, 기업의 자산·부채의 종류·성격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도 존재했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내용을 유지하되 특정 조정신청에 대한 위원의 제척사유를 신규 도입했으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체계에서는 채권은행들 간의 자율적인 협약(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 상의 기구였던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가 법상 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동 협약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함.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및 별표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에서 시정조치 수단 중 하나로 신규 도입된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58.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3. 15. • 마감일자 : 2016. 04. 04.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무부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등

59.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15. • 마감일자 : 2016. 04. 25.

<시행령>

-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유형분리, 철도노선별·사업별 회계구분·경리, 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 폐지 등과 관련하여 철도사업법이 개정(2015.12.29.공포, 법률 제13688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고의 기준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철도운임·요금 신고제도 정비(안 제3조, 제4조)
규제개선 차원에서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여객과 화물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운임·요금 신고제도를 여객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개정
-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등 기준 변경(안 제4조)
운임상한 고시에 있어 종전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만을 고려하도록 한 것을 서비스 수준까지 고려토록 개선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인가사항 적용 기준 변경(안 제5조)
철도사업자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있으나, 벽지노선의 개념이 모호하고 벽지노선의 경우 공적의무보상(PSO) 지원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벽지노선을 공적의무보상 계약이 체결된 노선으로 명확히 규정
-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기준 조정(안 제8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고 기준이 10명 이상 사망자 발생으로 되어있어 국민인식과 괴리가 있음에 따라 5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정지 대상으로 기준 조정
- 과징금 등 기준 신설(안 별표1)
5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근거가 신설되었고, 철도사업 면허 발급 시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별표에 동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준 신설

<시행규칙>

-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분류 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설정
- 철도차량의 유형분류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철도차량의 유형분류(고속·준고속·일반)에 따라 운행속도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기준 설정
- 철도운임·요금 관련 적용범위 축소(안 제6조, 제9조)
규제개선 차원에서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 완화(안 제8조)
운행 열차는 국토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와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선로사용 신청을 각각 하도록 하고 있으나, 2일 이내로 운행하는 임시열차 운행의 경우에는 업무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등을 위해 국토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생략하고 철도시설관리자의 선로사용승인으로 갈음하도록 규정
- 회계의 구분 및 경리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철도사업법 개정에 따른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대해 사업종류별, 노선별 세부기준 마련

○ 행정처분의 기준 보완(안 별표2)

사고기준 강화 및 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60.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15. • 마감일자 : 2016. 04. 25.

- 현장조사시 업무담당자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1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11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현장조사 시 업무 담당자가 증표 외에 제시해야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함

6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15. • 마감일자 : 2016. 04. 25.

-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3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협의체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개정(법

를 제13852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절차 도입, 각종 신고서류의 제출 부담 완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제도가 3년 단위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으로 통합·정비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계획의 명칭을 반영하고, 시행계획을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함
-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안 제9조 내지 제13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6조의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정책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 구성, 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협의회 운용 관련 사항을 정비함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명령 및 지정해제 삭제(안 제22조, 제55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지정명령과 지정해제를 규정한 시행령 제22조가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어 위헌 소지를 내포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제12조로 상향되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비함
- 기타(안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9조, 제58조)
현행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체계에 맞게 용어 통일, 한시법의 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안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3조, 별지 제8호서식 등)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등 각종 신고시 제출하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별지 제8호서식 등)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와 관련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재개업 신고 규정 신설(안 제9조, 별지 제11호서식)
현행법은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재개업신고에 대한 절차와 서식이 불비되어있어, 재개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6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통상부)

- 예고일자 : 2016. 03. 15. • 마감일자 : 2016. 04. 25.
- 중소기업자단체로의 수위탁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 위임 규정(제28조제2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 제2항 본문 내용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변경
-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작성 제출기관 중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를 삭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 변경(시행령 별표1)
-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록 작성·비치 의무(제20조의2제4항)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시행령 별표2)

6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3. 16. • 마감일자 : 2016. 04. 25.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근거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마련(2015년 12월 29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안 제7조제1항)
전자조달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

서 전자조달 이용자 상호간에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의 내용 및 절차 (안 제7조제2항)

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승인·지급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예외 (안 제8조)

현금 등으로 납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자적 납부의 예외로 함

6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3. 16. • 마감일자 : 2016. 04. 25.

○ ‘조달청의 수요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지원·대행’ 등의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2016년 1월 27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조달청장의 소프트웨어사업 및 시설공사 계약업무에 대한 조달업무 지원 및 대행의 업무 범위(안 제9조의4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중 사업계획 수립, 사업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 수행,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 및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설공사 계약 추진 관련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시설공사 설계용역 관리,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건설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 및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함

○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 물품을 중소기업,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안 제18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대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 이외에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 미만의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

6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16. • 마감일자 : 2016. 04. 26.
- 전력신기술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력신기술 제도의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3)
-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 재발급신청시 분실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을 신설(안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7조제2항)
-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 및 증명서 발급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1항)
-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분실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을 신설하고 처리기한을 단축(안 제28조제1항)

6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16. • 마감일자 : 2016. 04. 26.
- 전력신기술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민원

이 다수 접수되고 산업수요에 따른 등급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특급기술자(감리원)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중소 설계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설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및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력신기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8조제2항, 제25조의2제3항)
-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관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특급 자격기준이 전기분야 기술사로 한정하던 것을 기술사외 국가기술자격자도 일정경력을 충족하면 특급 자격을 받도록 완화(안 별표 1, 별표 2)
-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전기감리업자가 전기설계업을 등록할 때 이미 갖춘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4)

6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5. 16.

-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의무 이수자를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변경하여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아울러,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등록 등 위반행위를 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시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교육이수의무자 변경(안 제17조제1항제1호)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교육의무 이수자를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로 변경함

○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안 제28조제6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함

6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2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호, 2016.7.31. 공포, 2016.8.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2조)

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규정함.

○ 법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는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6조)

법 적용이 전부 배제되는 겸영투자업자를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외국환중개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하고, 법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은 3천억원, 금융투자업자(단,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은 제외)·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2조원)로 정함

○ 임원의 자격요건(안 제7조)

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요건 외에 영업인가 취소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상근감사 또는 금융위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으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제재 수준에 따른 냉각기간(해임 또는 면직요구 등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등은 4년,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건전경영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추가 결격요건으로 정함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안 제8조)

중요한 거래관계 또는 경쟁·협력 관계에 있는 법인을 최근 3년간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등으로 하고,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한 사람 등으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 법률자문·경영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며,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 이사회 의결로 임면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안 제9조)

이사회 의결로 임면해야 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전략기획, 재무관리 업무 및 위험관리업무로 정함.

○ 임원 등의 겸직제한 범위 및 겸직 승인·보고 등(안 제10조·제11조)

법에서 정한 상근임원의 겸직 가능 범위 외에 여신전문금융회사(고객 이해상충·건전경영 저해우려가 없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고객 이해상충·건전경영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로 자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 등에 대한 겸직을 추가하고, 일부 사전승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반기별 현황을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함.

○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 이상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12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 지배구조내부규범 규정사항(안 제13조)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이사회 구성 방법 및 절차, 이사의 자격요건,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기능·운영 절차,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보수위원회 설치의 의무인 금융회사 범위(안 제14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상근감사 선임 등(안 제16조)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이 갖추어야 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하고, 상근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로 정함.
- 보수위원회 관련(안 제17조)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은 임원과 증권·파생상품의 설계·운용·판매 등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으로 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직원에게 대한 성과보수 체계 마련(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할 것 등),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이연지급 등을 하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에는 임원 유형별 총액,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성과 측정 및 위험조정 기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 등(안 제19조·제20조)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세부 사항으로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 업무수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회사(투자자문, 투자일임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않으면서 투자일임재산 합계가 5천억원 미만인 자) 및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하되,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를 정함.

○ 대주주 변경승인 등(안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대상 외에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추가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시 적용되는 법령(금융관계법령 등), 심사요건(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안 제27조)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을 2년(필요시 수시 심사)으로 하고, 적격성 심사시 심사법령(금융관계법령 등), 세부 심사요건(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정하며, 의결권 제한기간(최대 5년), 법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 사유 외에 추가사유(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등)도 규정함.

6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27.

○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설치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3217호, 2015. 3.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비 명칭 삭제(안 제2조)

7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26.

○ 감사대상 기관의 수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감사 주기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결과 통보받은 경고 처분요구 내용에 대한 공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감사 주기 변경(안 제9조)
- 감사결과 공개 강화 방안 마련(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결과 경고 처분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해당 지역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
- 재심의 신청자의 의견 청취 등(안 제20조)
재심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 요청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

7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26.
- 현행 ‘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도록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
- 위원의 구성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
- 동 위원회 기능에 특별교부세 당해 회계연도 운영방향 및 기준 심의 추가

72.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26.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16.6.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부담 완화 및 유사 제도와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규정 신설(안 제35조의5제2항 신설)
법령에 의한 의무 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보조사업 관련 자료 보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37조의 7 및 제37조의8 신설)
 - 1)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정함.
 - 2)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및 지급기준(최대 1 억원)을 정함.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 1) 법률로 상향 규정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위원장 임기 등을 삭제함.
 - 2) 법률에서 위임한 당연직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간사 및 실무위원회구성 운영 등을 정함.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기준(안 제7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재정지표가 악화된 경우의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기준을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된 경우로 정함.
-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안 제72조의3 신설)
 - 1)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그에 준하는 대우로 하며, 긴급재정관리단체에서 급여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함.
 - 2) 긴급재정관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안 제72조의4 신설)
 - 1) 긴급재정관리계획안에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등을 포함하도록 함.
 - 2)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예외 상황을 정함.
 -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 검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안 제72조의5 신설)

이행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안 제72조의6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가 시 도 20억원, 시 군 구 10억원 이상으로 정함.

7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06.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적으로 확정일자 신청 · 부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계약시스템 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확정일자의 개념 및 그 발급 절차를 세분화

-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종이계약서를 비롯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것(‘종이계약서 등’)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전자계약증서’)으로 이원화하고, 확정일자 부여기관 중 하나인 주민센터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2) 주민센터 근무시간(09:00~18:00) 외에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접수된 확정일자 신청 관련, 그 부여시점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 도입

전자계약증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종이계약서에 비해 실질적으로 확정일자 담당공무원의 관여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까지(종기는 ’ 16. 12. 31.) 수수료 면제

7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26.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3680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 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술수요조사(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수요조사에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시장 동향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등(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등으로 연구과제평가단 후보단을 구성·관리하도록하고,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각 평가 때마다 연구과제평가단 후보단에 속해 있는 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함.
-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필요하면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연구개발성과의 실험·검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확산 등을 위한 전문센터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전문연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의 교육·훈련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 연구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75.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26.

-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680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기술료의 징수·감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 1) 법률에서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3)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협약 체결(안 제8조 및 제9조)

1)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미리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과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과 사용·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2)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을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기술료의 징수·감면(안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징수와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술료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로 징수하거나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획연구·인력양성 등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가 아닌 경우에는 기술료 전부를 감면하고, 중소기업 등이 기술료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료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7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26.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으로 약칭)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 적용중인 협정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동 6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인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세안회원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규정한 별표 3 중 석유화학제품 6개 품목(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에 대한 협정세율을 0%로 인하함

77.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17. • 마감일자 : 2016. 04. 01.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7)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설치 의무화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 공공건물·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78.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기상청)

- 예고일자 : 2016. 03. 18. • 마감일자 : 2016. 04. 27.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상감정 업무범위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 1)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2) 기상감정업으로 등록한 자가 기상감정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은 기상감정의 업무절차 등을 고시함

7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03. 18. • 마감일자 : 2016. 04. 27.
-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제14067호, ‘16.3.2.공포)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청소년이 신분증 위 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의 면제는 신분증 위 변조,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최초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80.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18. • 마감일자 : 2016. 04. 27.
- 현재 위생용품(세척제,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은 1999년 폐지된 (구)「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법률을 개정할 수 없어 불합리한 규제 적용 사례가 나타남.
따라서 제정안을 통해 전반적인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위생용품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
 - 1) 세척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 등을 세척하는 세제
 - 2)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것
 - 3) 기타 위생용품: 일회용의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ナイ프·이쑤시개·냅킨·「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또는 그 밖에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한 물수건
- 영업신고,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2)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실시기관, 내용, 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2)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 자가품질검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영업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81.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3. 18. • 마감일자 : 2016. 04. 27.
- 현행 시행규칙 제13조3호에 의거 헬기(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의 경우 민간에서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초임 조종인력을 선발 후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조종사(400H이상 비행자)가 되기까지 장기간의 양성시간(약 5년)과 양성비용(약8.3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즉각 활용가능한 숙련된 조종인력 획득과 관련예산을 절감을 위하여 정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예비역항공장교(전역예정자 포함)를 조종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함.
- 법 제9조에 군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교의 경우 시행규칙 제6조에 능력의 검증을 위한 요건 및 방법, 선발기준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사관의 경우 임용시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준사관 임용시험에 대한 요건 및 방법, 선발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준사관 지원자격에 ‘회전익항공기 정조종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전역예정자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 제대군인’ 을 포함(안 제13조제1항4호 개정)
- 준사관 임용시험에 대한 요건 및 방법, 선발기준의 대강을 규정(안 제13조제2항 개정)

82. 통일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6. 03. 18.
- 마감일자 : 2016. 03. 2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인력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 본부 증원(별표 1, 별표1의2)
 - 5급 1명, 6급 1명 등 총 2명 증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급조정(별표 4)
 - 간호5급 1명 증원

8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18.
- 마감일자 : 2016. 03. 28.

- 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개방특허 실시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 심사인력 5명(6급 5명)과 등록방식 심사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새로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산업재산활용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표 출원 및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 증원(안 별표1, 별표2)
 - 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위한 상표 심사인력 5명(6급) 증원
 - 개방특허 실시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등록

방식 심사인력 1명(7급) 증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 분장(안 제8조제4항)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산업재산활용과에서 담당

8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18. • 마감일자 : 2016. 04. 27.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업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8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공사업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허위의 공사실적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실적신고할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의 공사업 등록 첨부서류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및 정보통신기술자 확인 첨부서류 추가(안 제16조·제22조·제23조)
 - 1)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2) 공사업의 등록신청,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정보통신기술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함
- 공사업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4조의2)
-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증빙서류 보완(안 제28조)
 - 1)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증빙서류를 공공부문 발주공사와 민간부문 발주공사·하도급(재하도급 포함)공사로 구분
 - 2) 공공부문 발주공사는 발주자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를, 민

간부문 발주공사·하도급(재하도급 포함)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이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모두를 제출하도록 함

○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 규정(안 제34조의2)

발주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에 제출한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을 정함(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85.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기상청)

• 예고일자 : 2016. 03. 18. • 마감일자 : 2016. 04. 27.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해소방안」 권고('15.9.21)에 따라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방법 구체화 및 수수료체계 개선(안 제3조·제4조·제7조, 별표1, 별지제1호·제4호·제4호의2)

1)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기상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체계 개선 및 납부방법 명시

2) 제7조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 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통일(안 제10조, 별지제7호~제10호서식)

1)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신청·재등록, 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진 규격 통일

86. 「약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21. • 마감일자 : 2016. 05. 02.

- 환경부장관이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제30조, 16.1.27)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9조제2항)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 별표 개정)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8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3. 21. • 마감일자 : 2016. 03. 31.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8년 ○월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한시 조직 및 기존부서의 업무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6. 1. 25. 시행)에 따라 신설된 업무에 대하여 하부조직에 업무 분장사항을 추가하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4급의 청렴연수원장 직위에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로,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정원 1명(4·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로 각각 재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8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3. 22.
- 마감일자 : 2016. 0. 28.

- 해외문화홍보원장 직위를 활용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관광레저정책관을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는 등 관광 부서를 전면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상향(4·5급→4급)하고, 7명(5급 3, 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3.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광정책실에 두는 소관 부서 및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관광정책실장을 신규 지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민속연구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3. 22.
- 마감일자 : 2016. 04. 01.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2016년 2분기 소요정원을 증원하고, 국세청의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을 국세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90.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3. 22.
- 마감일자 : 2016. 05. 02.

-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 83조의3)

- (1) 수중발파사 : 1, 2, 3급
- (2) 재난안전관리사 : 재난안전관리사, 재난안전관리사(보)
-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9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3. 22. • 마감일자 : 2016. 05. 02.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파일형식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될 예정이나, 현행 규정상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의 자격요건이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대행기관으로의 참여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음. 대행기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업무대행 기관 자격요건에 ‘전자문서의 유통 관리 보관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고려사항에 ‘대민서비스 지원능력’을 추가함(안 19조제3항)
- 현행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 이외에 전자문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유통 관리 보관 업무 경험에 있는 기관”을 자격요건으로 추가하고, 대국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민서비스 지원능력”을 고려사항으로 추가함

9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 예고일자 : 2016. 03. 22. • 마감일자 : 2016. 04. 01.
- 특급택송 물류량 증가에 따른 인천세관의 특송화물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급증한 내국세 환급업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4

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9급 6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2명(9급 12명)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3.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 예고일자 : 2016. 03. 22. • 마감일자 : 2016. 04. 01.

- 건축설계 공모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전검토 및 단가 계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 ○명을 증원하며, 원자재 가격관리 및 원산지 관리 등을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품질 및 성능검사 인력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22. • 마감일자 : 2016. 05. 0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법 개정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시행예정일 2016.8.30.)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친호적 수목장립의 장려 및 장사시설 범위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의무 신설(안 제10조)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외에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에서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기록·

보관의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22. • 마감일자 : 2016. 05. 0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법 개정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시행예정일 2016.8.30.)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친화적 수목장림의 장려 및 장사시설 범위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의무 신설(안 제10조)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외에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에서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기록·보관의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96. 「산업통상자원부외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22. • 마감일자 : 2016. 04. 01.
-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투자실에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지원 기능을 신설하고, 산업기반실의 생활용품산업 육성 관련 기능을 무역투자실로 이관하며,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정책실의 산업융합 관련 기능을 산업기반실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이관하고, 에너지바우처 도입에 따른 에너지복지

업무 확대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명령 실효성 강화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 각 증원하며, 국가표준 개발·운영 업무의 소관부처 이관에 따라 해당 기능 수행 인력 1명(6급 1명)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4. . 공포, 2016. 4.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무역투자실에 무역지원과를 신설하여 수출확대 지원 및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에 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하던 산업융합 업무를 산업기술정책과장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디자인생활산업과를 디자인산업과로 개편하여 창의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하던 지식서비스산업 업무를 다지인산업과장이 분장하도록 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일부 정원의 직급을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7.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22.
- 마감일자 : 2016. 03. 28.

-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총경 1명, 경정 4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함정운용 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8명(7급 37명, 8급 19명, 9급 1명, 총경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4명, 순경 1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03. 23.
- 마감일자 : 2016. 04. 04.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과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 및 특송물류센터 검역 강화를 위하여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결원인 운전서기보를 농업서기보로 전환하며,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99.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추진기구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3. 23.
- 마감일자 : 2016. 04. 0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미입주 정보시스템 및 인력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립을 위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제2조 및 제3조)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을 설치·운영함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의 구성(제4조)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은 단장 1인, 실무과장 및 과원으로 구성함

○ 관계기관·단체등에의 협조(제5조)

단장은 필요시 관계기관에의 자료·의견 제출 요구, 조사와 연구 의뢰 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의 정보화 담당관 및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유효기간(부칙 제2항)

이 영은 2018년 말까지 효력을 가지되, 그 전에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관리·운영 조직이 구성될 때에는 효력을 상실도록 함

10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3. 23. • 마감일자 : 2016. 05. 02.

○ 군인사법(제7조) 상 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임에 반해 여성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을 저해함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3년→4년)이 필요함.

○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3년)은 타 단기복무 부사관(4년) 대비 짧은 복무기간으로 숙련 후 활용기간이 타 부사관에 비해 1년 짧아지기 때문에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력순환율 및 획득소요 증가로 인력운영의 안정성이 낮음.

○ 현재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남·여 모두 동일하게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성임을 이유로 의무복무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사관이 유일함. 따라서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필요함

○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조정(군인사법 제7조 ①항 7호 ‘나’ 목 삭제)

101.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군장학생 본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 장학금 반납심의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군장학생 반납의 면제 규정에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군장학생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납의 세부 규정과 절차 마련
 - 1) 군장학생 선발취소시 장학금 반납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 2) 장학금 반납면제 또는 연기에 대한 이의 있을시 각군 참모총장이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 3) 각군 장학금 반납면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0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3. 23. • 마감일자 : 2016. 04. 04.
-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를 위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2345호, 9999.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정책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4급 정원 중 1명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103.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23. • 마감일자 : 2016. 04. 04.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안전법 개정에 따른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사이버보안태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원자력·방사선 및 핵융합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과학기술을 통한 재난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바이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삼차원프린팅 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에 전과환경 연구·시험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과학유산보존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0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3. 24. • 마감일자 : 2016. 04. 14.
- 자동계좌이체납부, 환급금의 양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청구 등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지급 및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예금계좌에 직권으로 환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와 결과 통보서식을 신설함

1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03. 24.
- 마감일자 : 2016. 05. 0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37호, 20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위탁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위탁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규정(제5조의3 신설)

10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24.
- 마감일자 : 2016. 05. 03.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법률 제13947호, '16. 2. 3)되어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과 전문가의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과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6항)
 - 1) 학부모 참여방법(안 별표 1의1)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학부모를 참여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참여방법(안 별표 1의1)
학교장은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자격기준(안 별표 1의1)

건설기술관련 또는 소방, 가스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기능사 이상·
전문학사 이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10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3.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UN 무기거래조약 의무이행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청본부 인력을 보강(5급 1명)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일부 직급에 대한 직급 조정 내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 UN 무기거래조약 의무이행 인력보강(방산기술통제관) : +1명(5급)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 : ±4명
 - 청본부(±1명) : 5급1 → 4.5급1
 - 사업관리본부(±1명) : 6급1→5급1
 - 계약관리본부(±2명) : 5급1 → 4.5급1 / 6급1→5급1

10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24.

• 마감일자 : 2016. 05. 04.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유치기관 지정표시 및 그 밖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안 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한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함.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안 제5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연간배상한도액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의 경우 1억원, 종합병원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함.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안 제6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함.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안 제7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함.

○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안 제9조, 별표 1)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한 거래내역 및 거래조건 등을 게시하거나 구두 또는 문서로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영어로 게시 또는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함.

○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수(안 제10조)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병상수의 100분의 8 및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됨.

○ 보고내용 및 절차(안 제11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등 안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 의료통역능력 검정(안 제14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 중에서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2)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기관은 수수료의 금액, 징수·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안 제15조)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 광고를 운영하는 자는 전체 외국어 광고 중 특정 진료과목의 광고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등(안 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는 해당 외국인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간 협약에 근거하여 의뢰되는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기록저장소에 해당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송해야하며, 시행사항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유치기관 등록의 취소 등(안 제1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109.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3. 24. • 마감일자 : 2016. 04. 14.
-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일원화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품·경영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부처협업 시스템 구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WTO 및 국제표준 등 국제규범에 적합한 표준용어 정의 확립

- 1) 표준의 영역이 국민생활·공공분야까지 넓어짐에 따라,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한정한 국가표준의 제한을 없앴(안 제2조 및 제3조제1호)
 - 2) 국제표준을 도입한 산업표준의 대상을 현행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에서 ‘제품 및 서비스’로 확대(안 제3조제5호)
 - 3) WTO·TA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적합하게 성문표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술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정의(안 제3조제4호 및 제16호)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 1) 적합성평가제도의 시험·검사 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KS) 준용을 의무화(안 제25조의2제1항)
 - *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 및 추가과제」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
 - 2) 일원화된 적합성평가제도의 시험·검사 방법에 따른 이행 결과를 상호인정 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 3) 부처별 소관 시험·검사·인증제도 존속 필요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22조제3항)
 -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14.8.5)
- 제품 인증기관 등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체계 근거 마련
- 1) 인정체계 대상기관을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및 경영체제 인증기관 등 다양한 적합성평가기관으로 확대(안 제23조제2항)
 - 2) 적합성평가기관 평가 등 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 위탁 및 출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제6항 및 제27조제1항)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구축
- 1) TBT 협정에 적합하게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할 무역기술장벽 대상을 ‘표준’에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제도’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
 - 2) 무역기술장벽으로 수출기업 겪어야 할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3항)
 - 3)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수집·분석·보급, 국내외 협력 및 연

구개발 등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11호)